

이용 안내서



행복하우스요양원

“행복하우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행복하우스**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 존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응원하는 행복하우스, 가족들의 쉼이 되는곳. 행복하우스”가 되도록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기관명	행복하우스	설치일자	2023. 1. 1.
급여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25명
대표자	이종두	협력병원	희망의원
메 일	7559669@naver.com	전화번호	061-755-9669
		Fax	061-755-9663
주 소	순천시 서면 노은 3길 9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2,500 원(1식) × 3=7,500원 100원 × 2=200원/간식비	
	이.미용비	무료(자원봉사)	
시설규모	가동 : 208.57㎡/사무실,직원휴게실,회의실,물리치료실,상담실,물품실,면회실 나동 : 375.24㎡/호실7개,프로그램실,목욕실,세탁실,주방 및 식당, 의료실, 방풍실 다동 : 12. 6㎡/ 정자 라동 : 77㎡/ 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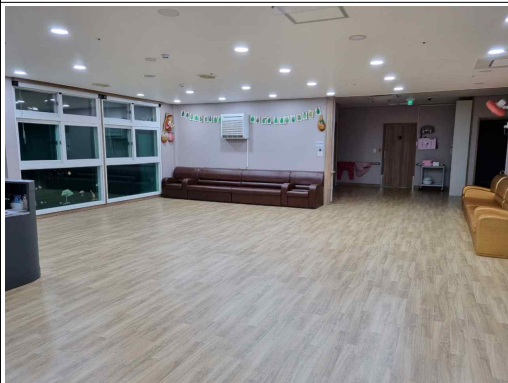
- 생활실 내부



침실 1



침실2



프로그램실



● (2023.1월 기준 요양원 현황)

◆ 시설현황

구분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면회실	의료간호	프로그램	식당/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실	휴게실	물품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갯수	2	5	1	1	1	1	1	1	1	7	2	1	1	1	1	1

◆ 직종별 직원 배치 현황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계약의사	조리원
1	2	1	13	1	1

◆ 주,야간/평,휴일 근무 인력

구분	주간	야간	주간 근무시간: 09:00-18:00 야간 근무시간: 18:00-09:00
평일	9-10명	2명	
휴일	6-7명	2명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2023년/30일기준,식대포함)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당	81,750	75,840	71,620
본인부담금(20%)	724,170	688,710	663,390
본인부담금(12%)	526,900	505,620	490,430
본인부담금(8%)	428,270	414,080	403,950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1

※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 20%, 감경대상자 8%~12%, 기초수급자 0%

◆ 계약의사

희망의원(정용운)	초진	재진
	17,320	13,380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21.12.03 ~ 31.12.03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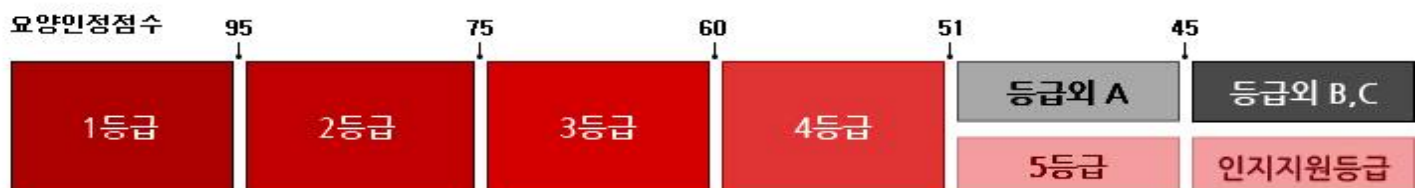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운영규정 개요 (입소정원 : 25명)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2. 계약기간

입소의뢰나 신청시 입소시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장기요양 1~2,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한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기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용한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급여성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 옷갈아입기 지켜보기, 옷챙겨드리기, 입기도움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듐)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용도움
	12. 산책(외출)동행	- 산책(외출)동행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6. 보행훈련	1. 산책을 통한 지속적 하지 근력 강화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들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장루관리 (4)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사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일일 일정표

시간	내용
06:00~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07:00~08:40	아침 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08:40~09:30	기본 건강체크, 아침 체조, 간식제공
09:30~12:00	목욕케어, 오전 프로그램 제공
12:00~13:00	점심 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3:00~14:00	개인활동, 휴식 말벗 지원
14:00~17:00	오후 간식제공, 오후 프로그램 제공
17:00~18:00	저녁식사 및 개인위생, 투약
18:00~20:00	자유시간(음악, 말벗, TV)
20:00~22:00	저녁(필요시), 화장실 도움, 취침
22:00~06:00	야간점검 라운딩, 체위변경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여가프로그램 A,B	인지프로그램 A,B	인지프로그램 c		예배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 매월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코로나 대응 현황

구분 \ 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허용(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가능)				외출, 면회 금지 (영상통화권장)
방문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1. 응급환자 발생 → 응급조치 (주간:간호(조무)사 / 야간:야간근무자)

2. 연 락

구 분			
주 간	시설장	010-2080-0120	119안전 센터
야 간	요양팀장	010-9310-8383	

*연락우선순위 : 시설장 → 요양팀장 → 119 안전센터 → 의료기관 이송

● 후원 안내



◆ 후원의 종류

지정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 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계좌안내 : 농협 615040-51-034091(행복하우스)

◆ 자원봉사 안내 (신청은 기관전화 : 061-755-9669)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커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시설봉사	정원가꾸기, 청소, 텃밭일구기, 주방보조

●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난

*호스터 부착 전
해당 부분을
천선에 따라
오려주세요

관찰아

노인학대의 약 80%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대 당하는 노인들은 자책감과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또는 110

당신의 신고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욕망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기괴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조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조제3항제1호)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사실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0조제3항)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변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린다.
-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자기소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 미끼 및 사회공정을 지속한다.
- 빈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상처 수치를 줄 수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시키는 거르는 등 명령성조나 반수정이다.
- 노인에게 동요한 억압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골에 압수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Goodwinus

지정학술 후원기관

학대노인

우리는 지킴이!

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함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0조제3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1. 전 종사자 인권교육 (연 6시간 이수)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3.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분기1회) 실시 (모든 수급자 및 종사자 실시)
4.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수급자+보호자)

- 13 -